

JEONNAM
2023

JEONNAM
2023

주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체육회

JNSAO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OT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THE 104th
NATIONAL SPORTS FESTIVAL

2023.10.13.~10.19.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THE 43rd
NATIONAL PARA GAMES

2023.11.03.~11.08.

발 간 등 록 번 호

78-6460000-000457-06



인생을 품다. 세상을 낚다
전라도천년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2023년 3월(제365호)

생활에 유익한 법 무 상 식



전라남도
JeollaNamdo

Contents

♣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7
---------------------------	---

I 새로운 판례

1.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7
2. 업무정지처분취소	21
3. 권리범위확인(디)	23

II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	26
2.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	30
3.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34
4.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적용대상	38

III 행정심판 재결사례

1.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해수 인수관) 반려처분 취소청구	42
2. 건축허가(우사)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48

IV 생활법률 상담사례

1.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	58
2.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4년 후 그 친구는 재기하여 재산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어,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60

3.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62
4.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64
5. 제가 발명한 기술을 특허등록을 하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 외에 “실용신안”이란 것도 있던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65

V 법무단신

1. 준공된 아파트 등기절차 이행지체로 미등기 상태 유지됐다면	67
2.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에 추락... 법원 "아파트관리업체 등 배상책임"	70
3. 소장 부분 적법 송달된 이후 폐문부재로 판결정본 송달 안돼 공시송달했다면... ..	72
4. "불법 점유자 쫓아내려고 건물에 무단 침입... 건조물침입죄 해당"	74
5.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76

VI 최근 개정 시행법령

· 소득세법	78
--------------	----

VII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 다문화가족	96
· Multicultural Families	102
· 多元文化家庭	105
· Gia đình đa văn hóa	107

VIII 법제처 법나들이

· 학교폭력 예방법	110
------------------	-----

태어나면 1살? 아니아니 0살!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우리 이제 만 나이를 사용해요!

18세

65세

35세

1세

(「행정기본법」·「민법」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

〈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 〉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로 통일] 기반 마련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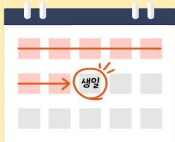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3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ex. (2023) - (1992) - 1 = 30세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ex. (2023) - (1992) = 31세

4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만 나이 계산기’로 나이를 손 쉽게 확인해요



만 나이 계산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년월일
1978. 07. 09

기준일
2023. 06. 28

44세

만 나이 계산기 (생일부터는)

생년월일
1978. 06. 28

기준일
2023. 06. 28

45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5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00세 = 만 00세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름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회원가입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14

일반회원

14

14세 미만 회원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7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를 알아볼까요?



시행
이전

www.OO버스.com/민원 게시판

아이 버스 요금 환불해 주세요

저희 아이가 한국식 나이로 7살인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 6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른과 같이 타면 아이의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사님께서 저희 아이가
몇 년생이냐 물어보시더니
7살이라며 요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사
례
1

8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를 알아보까요?



시행
이후

2024년 봄

사
례
1



9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를 알아보까요?



시행
이전

사
례
2



10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를 알아보까요?



시행
이후

2023년 가을



사
례
2

11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를 알아보까요?



시행
이전



사
례
3

12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를 알아보까요?



시행
이후



사
례
3

13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Q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누나·언니·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A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나이가 달라도
모두 친구예요!



14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A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헷갈릴 일이
사라질 거예요



15



Q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A

☑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16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Q

그럼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건가요?

A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17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해 주세요

몇 살이세요?

2024년 1월 1일,
어느 카페

1994.6.29생

이제 만 나이가
원칙이니까
29살이라고 해야하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초는 몇 개를 꽃을까?

우리 아이
돌이니까
이제 한 살
되었네?

초는
한 개면 돼요
응애~



만 나이가 원칙이니까

예전에는
햇갈렸는데
이제 만 나이로
적으면 되겠다



18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I. 새로운 판례



1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대법원 2022도2092

[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톱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 ◇ 1.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톱킹범죄사실과 스톱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스톱킹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법원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톱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톱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는 횟수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

1. 가. 스톱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톱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은 스톱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1. 4. 20. 제정되었다.

- 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제2조 제1호)로,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제2조 제2호)로 정의하고 있다. 스토킹행위는 행위자가 감정이 해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는 경향과 강력 범죄로 비약할 가능성이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행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를 구별하면서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부터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제3조)와 긴급응급조치(제4조)를 통해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도 이러한 스토킹행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 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 단계에서의 임시조치로서 잠정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 일정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제11조 제2항), 법원은 직권 또는 위와 같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위 각 접근금지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9조 제5항, 제11조 제3항 참조).

2. 가. 위와 같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스토킹처벌법의 규정 체계,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특성, 스토킹처벌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①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제3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그러나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 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잠정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나.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스토킹행위자가 제3자에게 추가 스토킹범죄를 예고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에 열거된 5가지 행위 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거나 스토킹범죄 단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 스토킹범죄 이후 정황으로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를 위해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도록 요구하는 결과에 이르므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잠정조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구속 또는 재체포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제208조, 제214조의3 참조)이 있으나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再) 잠정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이상,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행위자에 대하여 2022. 7.경 잠정조치 기간이 2022. 9. 3.까지인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고, 검사는 다시 2022. 9. 8.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잠정조치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데, 청구서의 ‘범죄사실’은 종전 잠정조치 청구 당시 범죄사실과 동일하였음
- ☞ 원심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 대법원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음

2

업무정지처분취소

* 대법원 2022두57381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확인·설명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확인·설명서) ◇

구 공인중개사법(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어 2018. 11.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확인·설명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798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제4항의 내용, 체계와 취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의미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원심은,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가 보관하던 확인·설명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음

- ☞ 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가 보관하던 이 사건 확인·설명서는 원고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 아니라 계약 당시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던 원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확인·설명서에 원고의 서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에도 원고의 서명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취지로 원고의 서명과 날인이 모두 있는 확인·설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 환송함

3

권리범위확인(디)

* 대법원 2022후10012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선행디자인에 기초하여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디자인보호법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등 관련규정의 문언과 내용, 그 입법 취지, 자유실시디자인 법리의 본질 및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을 대비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자·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자·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디자인보호법 제36조)을 두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참조).
2.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위 예외 규정의 적용

없이 디자인 등록된 경우와 동일하게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즉,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이 등록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3.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그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제3자가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디자인보호법은 위와 같은 입법적 결단을 전제로 제3자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사이의 이익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6조 제2항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준수해야 할 시기적·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고,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받더라도 출원일 자체가 소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하였다.
4. 한편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이는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 가능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을 공지디자인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참조).
5. 이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 법리는 기본적으로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은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

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제3자의 보호 관점에서 보더라도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시기적·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받아 등록된 이상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제3자와의 이익균형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허용하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이 디자인권자와 제3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100조)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공지디자인에 대하여 별다른 창작적 기여를 하지 않은 제3자에게 법정 통상실시권을 넘어서는 무상의 실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보호를 법으로 정해진 등록디자인권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 피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자 원고가 위 심결 취소를 청구함

☞ 대법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을 대비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뒤, 원심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과 자유실시디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대비한 결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II.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사례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등 관련)



질의요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친환경차충전구역”이라 함)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전기자동차(제1호),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제2호, 이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에서 제외되는지?



회 답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서는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전기자동차(제1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제2호)를 열거하고 있을 뿐, 그 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할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친환경자동차법령에서는 필요한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명시적으로 한정하는 문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명문의 근거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서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일정한 차량의 주차금지 의무를 규정한 것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려는 취지(각주: 2018. 3. 20. 법률 제155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라는 점,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당초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차금지 대상을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전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행과 같이 규정(각주: 2017. 3. 20. 의안번호 제2008407호로 발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18. 2. 19.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제356회 법안심사소위) 참조)하였다는 점을 종합할 때,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는 충전 필요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만약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고 본다면, 운행을 위하여 전기 충전이 필요한 자동차가 충전시설을 제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전기 충전이 필요한 자동차만 주차를 허용하고 충전이 불필요한 차량의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등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자동차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서는 주차금지의 대상 구역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충전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만의 충전 및 주차를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까지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이라는 친환경자동차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라는 표현은 주차금지의 대상이 되는 구역의 명칭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해당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할지라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생략)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 10. (생략)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 ⑥ (생략)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 ⑫ (생략)

사례2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관련)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감리업자(각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1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각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이하 “특급감리원”이라 함) 중 소방기술사를 책임감리원(각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을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각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공사 현장 등으로, 같은 호 나목에서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을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함)의 공사현장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이 있는 경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과 나목 중 어느 목이 적용되는지?(각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을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이 적용됩니다.

 이 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1)에서는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로 “아파트 등(각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현장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는 점 역시 분명합니다.

한편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2)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을, 동일한 규모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라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을 각각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규정체계는 아파트가 다른 건축물에 비해 소방공사 감리의 난이도가 낮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므로,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

라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같은 호 가목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기준인 같은 호 나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서는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만 아파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배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 그보다 크거나 작은 규모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아파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파트의 경우 다른 유형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비해 소방공사 감리의 난이도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사 소방공사 감리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더라도 명문의 근거 없이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이 적용됩니다.

※ 관계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비고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사례3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등)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주체를 말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담보책임기간(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임차인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전단)하면서,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각주: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청구가 이루어진 시점을 문제삼지 않고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관련된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는 논외로 함.)



회 답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을 “담보책임기간”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은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 나아가 관련 규정들의 입법연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는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하자보수의 절차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담보책임기간 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9조제1항에서는 하자보수의 종료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과 함께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구 「주택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축물 등의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하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의 규정(각주: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조문별 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2조의2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규정이 집합건물법에 저촉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법령 간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과 일치시키려는 취지도 있는바(각주: 2016. 8. 11.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이유·주요내용 및 조문별 제정이유서 참조), 같은 조에서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에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각주: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역시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하자보수 청구라는 재산권 행사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하위법령으로 법률과 달리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각주: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 내용에 기초하여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가능 기간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청구권 행사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입주자 등의 재산권 보호와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재량사항에는 하자보수청구권 행사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지, 아니면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규정할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0헌바368 결정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는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폭넓은 행정입법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 법제처 2011. 2. 24. 회신 10-0481 해석례 참조), 일반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기간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법률 문언의 내용과 체계,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기간의 기산일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는 점(각주: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례 참조)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 보수 청구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

② ~ ⑤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등(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사례4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적용대상(「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등)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각주: 경사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거실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 1개소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직통계단 전부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거실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 1개소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서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 1개소까지의 보행거리를 의미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은 구 「건축법 시행령」(19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고 개정한 것으로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모두가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의 보행거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되는데(각주: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 이러한 해석에 기초할 경우 오히려 직통계단들이 건축물의 중심부분에만 집중되어 원활한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그 해결을 위하여 보행거리 기준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그와 더불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축법령에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합리적인 규율이 이뤄지도록 한 것(각주: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와 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더라도 거실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그와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 1개소까지의 보행거리가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과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이에 더하여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전부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본다면,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 각각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서 동시에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각주: 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함.)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는 등 별도의 설치기준도 충족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구 「건축법 시행령」에 비해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개정취지(각주: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각주: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으로 같은 항 본문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될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치하는 직통계단 전부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의 위임 근거인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해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거실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 1개소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 ⑤ (생략)

Ⅲ. 행정심판 재결사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해수 인수관)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5. 25. 청구인에게 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 반려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9. 1. 1. ○○군 ○○면 ○○리 ○○번지 일원 약 36,000㎡에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조성하려고 토지주와 임대차계약을 한 후,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10㎡에 이 사건 양식장의 해수 인·배수관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18.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였다. 이 사건 양식장의 해수 인·배수관 설치가 계획된 지역에 ○○어촌계의 어업면허지(어업면허 제○○호)가 위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는 ○○어촌계의 동의가 필요한데, ○○어촌계는 2019. 12. 16. 피청구인에게 동의서 및 회의록이 부정 기재되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4. 20.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21. 4.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 8.7㎡에 이 사건 양식장의 해수 인수관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4. 14. 청구인에게 ○○어촌계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1차 보완 요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4. 23. 청구인에게 ○○어촌계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2차 보완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5. 3. 피청구인에게 보완 요청에 대한 1차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5. 6.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 및 ○○어촌계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3차 보완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5. 24. 피청구인에게 보완 요청에 대한 2차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5. 25. 청구인에게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8.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1. 5. 25. 청구인에게 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 반려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 1) 대법원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164 판결 등).”고 판시하였으며, 또한 대법원은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고 판시하였다.
-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양식장의 인수관과 사육수를 채우기 위하여 하루 중 만조시에 7~8시간씩 연간 2~3주 동안 펌프를 사용하는 인수행위가 주로 간조시에 조업하는 ○○어촌계의 어업권을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없거나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만 하는데 검토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3) 청구인이 설치할 이 사건 양식장의 인수관은 전체 길이 0m, 지름 0m인 PE관으로 하루만에 공사가 완료되며, 어업권을 간섭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양식장 운영으로 인근 어업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공증각서까지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 1) ○○어촌계의 어업면허지(어업면허 제○○호) 확인 결과, 이 사건 양식장의 해수

인수관이 설치되면 ○○어촌계의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어촌계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어업권자로서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권리자에 해당하므로 권리자의 동의가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2)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9. 1. 1.부터 임차한 토지에 대한 임대료 연간 ○○만원의 피해 등은 피청구인이 2020. 4. 20.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동의서의 부적절성 등 스스로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익 침해와 ○○어촌계의 이익 침해 비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관계 법령

- 1) 공유수면법 제8조, 제12조
-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9. 1. 1. ○○군 ○○면 ○○리 ○○번지 일원 약 36,000㎡에 "○○양식장"을 조성하려고 토지주와 임대차계약을 한 후,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 10㎡에 이 사건 양식장의 해수 인·배수관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18.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였다.
- 2) 이 사건 양식장의 해수 인·배수관 설치가 계획된 지역에 ○○어촌계의 어업면허지(어업면허 제○○호)가 위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는 ○○어촌계의 동의가 필요한데, ○○어촌계는 2019. 12. 16. 피청구인에게 동의서 및 회의록이 부정 기재되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4. 20.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 통보하였다.
- 3) 청구인은 2021. 4.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 8.7㎡에 이 사건 양식장의 해수 인수관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4. 14. 청구인에게 ○○어촌계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1차 보완 요청을 하였다.

- 4) 피청구인은 2021. 4. 23. 청구인에게 ○○어촌계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2차 보완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5. 3. 피청구인에게 보완 요청에 대한 1차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5. 6.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 및 ○○어촌계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3차 보완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5. 24. 피청구인에게 보완 요청에 대한 2차 의견을 제출하였다.
- 5) 피청구인은 2021. 5.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6) 청구인은 2021. 8.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

가)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 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제12조(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나)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권리자 등) ①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 5의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를 말한다)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법원은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두30139 판결)."고 판시하였으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나)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달리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 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이 사건 신청지 및 ○○어촌계 면허지의 해양환경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이 사건 양식장의 해수 인수관이 설치되는 곳에 ○○어촌계 면허지가 위치하여 해수흐름의 지형특성상 이 사건 양식장의 인수행위가 ○○어촌계의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점, ③○○어촌계는 공유수면법상 피해가 예상되는 법정 권리자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으로서 ○○어촌계의 의견을 검토·반영하고자 청구인으로 하여금 ○○어촌계의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이 사건 보완요청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허가(우사)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6. 4.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우사) 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0. 11. 17.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 외 1필지(답, 농림지역, 부지면적 6,728.8㎡,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우사(건축면적 3,975㎡)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6. 4. 청구인에게 ①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우량농지에 해당되며, 축사 집단화에 따른 대형차량 출입으로 인한 농로파손 및 영농활동 지장 초래, ②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어, 농지 집단화가 크고, 신청지 주변에 우사가 건축되어 있는 실정이나,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우량농지의 잠식 방지, ③신청지에서 270m 이내에 ○○강 지류인 ○○천이 인접하고 있어 폭우 및 집중 호우 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상존, ④신청지로부터 600m 이내에 ○○마을, ○○마을이 인접해 있고, 그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 환경오염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 예상, ⑤「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 우량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을 때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⑥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정주생활권 보호 및 군민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군정방침과 상충, ⑦○○군계획위원회에서 신청지는 우량농지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으로 우량농지의 축산시설 집단화 방지를 위하여 ‘부결’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9. 1.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1. 6. 4.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우사) 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은 2020. 11. 17. ○○군 ○○면 ○○리 ○○번지 외 1필지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의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① 입지상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할지라도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장래에 불확정한 개념으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점, ② 진출입 시 농로파손에 우려가 없다는 점, ③ 주변에 이미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으므로 보존의 가치를 상실한 토지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곳이므로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④ 「○○군 도시계획 조례」제○조의○(2021. ○. ○.)에 의하여 신규 축사 관련 허가기준을 강화하였지만 청구인에게 (2020. 6. 4.접수)소급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 ⑤ 친환경축사 신축할 예정인 점, ⑥청구인의 신청지는 수질오염, 토질오염, 악취 등 생활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구역이 아니라는 점 등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1)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허가(우사) 신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장래에 불확정한 개념으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 2) 이 사건 신청지 축사 진출입 시 농로는 가로 농로와 세로 농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농로가 파손될 우려는 전혀 없다.
- 3)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이미 우사 3개소가 완공되어 있고 1개소는 허가되어 건축되고 있으므로 보존의 가치를 상실한 토지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곳이며 우량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례·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4) 「○○군 도시계획 조례」제○조의○(축사시설의 허가기준)에 의하여 신규축사 관련 허가기준을 강화하였지만 청구인의 우사 건축허가신청은 2020. 11. 17. 피청구인이 접수하였으므로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
- 5) 청구인은「○○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축사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고 우사 칸마다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항상 마른 상태를 유지하고 완전한 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생태 환경에 부합한 친환경 우사로 신축할 예정이다.
- 6) 이 사건 신청지는 수질오염, 토질오염, 악취 등 생활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구역이 아니다.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지를 선정하였다.

나. 피청구인

- 1) 청구인의 1) 주장에 대하여

- 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등 참조).
- 나)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그러므로 그 심사 및 판단에는, ①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35조 제1항)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②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이념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조), ③‘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참조).
- 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를 건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축사가 법령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농림지역에 축사 건립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국토전체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국토가 훼손되면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국토에 대하여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 2) 이 사건 신청지 축사 진출입 시 농로는 가로 농로와 세로 농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농로가 파손될 우려는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의 진출입로는 폭이 협소한 농로로 수도작 경작을 위한 농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축사 건립 및 운영에 따른 공사 차량, 사료 반입, 출하 목적, 분노 운반 등 대형차량 운행으로 농로 파손 및 농기계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이미 우사 3개소가 완공되어 있고 1개소는 허가되어 건축되고 있으므로 보존의 가치를 상실한 토지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곳이며, 우량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례·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개발행위 시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대지면적 6,728.8㎡, 건축면적 3,975㎡ 규모의 축사는 그 높아·형태 및 색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과 부조화되며, 이미 이 지역 주변 우량농지에 축사 침투·잠식현상으로 인한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난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축사 건축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데,
 - 나) 청구인의 축사가 신축될 경우, 인근 농경지에 일조량, 통수, 통풍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주변 우량농지의 잠식 우려가 있으며, 대규모 경지정리 된 우량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큰 지역으로 우량농지의 축사시설 집단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유로 이 사건 신청지의 개발행위허가 심의안이 부결되었다.
 - 다) 청구인은 축사가 건축되고 있어 우량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고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수도작 경작을 위한 우량농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라) 또한, 청구인은 신청지 주변에 축사 허가 등을 한 점에 비추어 비례·평등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지는 '○○년 ○○○ 경지정리 사업으로 ○○면 ○○리에서 ○○시 ○○면까지에 이르는 광활한 농지로서 논농사를 위한 우량농지로 이 사건의 건축허가로 인하여 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전용이 이루어질 경우 우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해충,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한 예측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한번 발생할 경

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4) 「○○군 도시계획 조례」 제○조의○(축사시설의 허가기준)에 의하여 신규축사 관련 허가기준을 강화하였지만, 청구인의 우사 건축 허가신청은 2020. 11. 17. 피청구인이 접수하였으므로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 가) 정부는 논농사를 위한 농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이 사건 각 신청지를 비롯한 그 일대에 광활한 농경지를 조성하고 그에 따른 수리시설을 완비하였던 것이므로, 벼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논농사가 아닌 축사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목적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신청지의 농지는 논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 나) 이에, 피청구인은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와 집단화된 토지의 보전을 위하여 2017. ○. ○. ○○군 예규 ○호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발전시설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발전시설 허가기준(제○조 제○호)을 마련하여 우량농지를 보전해 오다가 2021. ○. ○. ○○군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제○조의○(축사관련 시설이 허가기준)를 신설하여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축사관련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 다)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은 논농사를 위한 농지 확충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군 관내에 있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를 보전해왔음에도, 계속 우량농지 등의 잠식이 이루어지자 최근에는 위와 같이 ○○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5) 청구인은 ‘○○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축사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고 우사 칸마다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항상 마른 상태를 유지하고 완전한 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생태 환경에 부합한 친환경 우사로 신축할 예정에 관하여
 - 가) 청구인이 우사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입지 및 설비 여건 등 충족하여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허가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며, 주변 환경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 나) 또한, 축사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고 생태환경에 부합한 친환경 우사를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제출한 설계도서에는 계획되어 있지 않았으며 설령 변경

설계하더라도 주변 수도작물 재배농가의 병충해 등으로 인한 영농작업 어려움을 예상치 못한 피해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6) 이 사건 신청지는 수질오염, 토질오염, 악취 등 생활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구역이 아니다.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지를 선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가축사육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로 인해 오·폐수, 악취, 분진, 해충 등 복합적인 방법으로 그 주변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토양, 수질, 대기 등의 다양한 환경 영역의 오염원이 되고, 또한 ○○군은 농업을 주된 경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해당하므로, ○○천의 수질을 보전하여 양질의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농작물의 생산력을 확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정 과제이자 정책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 나)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퇴비로써 토양에 살포되면 그 토양을 직접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에 남아있던 유해성분이 강우나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따라 하천으로 유출되어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충분하고, 사람이 축사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거나 축산분뇨를 부적·방치하는 등 인위적인 요인도 수질·토질·대기질을 오염시키는 데에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오·폐수 등 오염물질이 ○○천의 수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또한, 건축허가사항 시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인이 축사 설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기 어려우며,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어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사료되며,
 - 라) 주변환경 위해도가 높아 주민의 생활환경, 정주여건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청구인이 얻게 될 사익보다 중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7)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근거 및 종합적인 주변 여건을 고려한 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 1 「건축법」제2조, 제11조
- 2) 국토계획법 제57조,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 3) 「○○군 도시계획 조례」제○조의○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20. 11. 17.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의 1필지(답, 농림지역, 부지면적 6,728.8㎡,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한다)에 우사(건축면적 3,975㎡)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이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 2) ○○군계획위원회는 2021. 6. 26.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경지 정리 완료된 우량농지로 사업대상지로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부결’하였다.
- 3) 피청구인은 2021. 6. 4. 청구인에게 ①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우량농지에 해당되며, 축사 집단화에 따른 대형차량 출입으로 인한 농로파손 및 영농활동 지장 초래, ②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어, 농지 집단화가 크고, 신청지 주변에 우사가 건축되어 있는 실정이나,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우량농지의 잠식 방지, ③신청지에서 270m 이내에 ○○강 지류인 ○○천이 인접하고 있어 폭우 및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상존, ④신청지로부터 600m 이내에 ○○마을, ○○마을이 인접해 있고, 그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 환경오염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 예상, ⑤「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 우량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을 때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⑥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정주생활권 보호 및 주민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군정방침과 상충, ⑦○○군계획위원회에서 신청지는 우량농지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으로 우량농지의 축산시설 집단화 방지를 위하여 ‘부결’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4) 청구인은 2021. 9. 1.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5) 2021. 10. 6.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는 ○○시 ○○면과 ○○군 ○○면 사이에 위치하고, 신청지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운영 중인 축사가 있으며, 인근 마을에서 이 축사 사이에 장애물이 없이 탁 트인 상태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마을, ○○마을)은 바람 방향에 따라 악취, 해충 등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 또한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고, 이 사건 신청지로 진출입하려면 농로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농경지(논)는 수리시설이 갖추어지고 경지정

리가 잘된 우량농지이며, 신청지에서 약 270m 정도 위치에 ○○강 지류인 ○○천이 흐르고 있고, 이 사건 신청지는 주변 농경지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

- 가)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 나) 협의 의제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3.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고,
- 라) 주변 지역과 관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은 “①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②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③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 가)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행정청 재량판단은 공익을 중시하고, 특히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①입지상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할지라도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장래에 불확정한 개념으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진출입시 농로파손 우려가 없다는 점, ②주변에 이미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으므로 보존의 가치를 상실한 토지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곳이라는 점, ③「○○군 도시계획 조례」 제○조의○(2021.○. ○.)에 의하여 신규 축사 관련 허가기준을 강화하였지만 청구인에게 (2020. 6. 4.접수) 소급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 ④친환경축사로 신축할 예정인 점, ⑤신청지는 수질오염, 토질오염, 악취 등 생활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구역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의 내용, 현장검증 등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지는 ○○시 ○○면과 ○○군 시종면 사이에 위치하고, 신청지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운영 중인 축사가 있으며, 인근 마을에서 이 축사 사이에 장애물이 없이 탁트인 상태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마을, ○○마을)은 바람 방향에 따라 악취, 해충 등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 또한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고, 이 사건 신청지로 진출입하려면 농로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농경지(논)는 수리시설이 갖추어지고 경지정리가 잘 된 우량농지이며, 이 사건 신청지는 주변 농경지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신청지에서 약 270m 정도 위치에 ○○강 지류인 ○○천이 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 ①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농경지(논)는 수리시설이 갖추어지고 경지정가 잘된 우량농지이며, 이 사건 신청지는 주변 농경지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사건 신청지와 인근 농경지는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농지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의 진출입로는 폭이 협소한 농로로 축사 건축 및 운영에 따른 공사 차량, 사료 반입 및 분뇨 운반 등 대형차량 운행으로 농로 파손 및 농기계 안전사고 우려가 인정되는점,
- ② 신청지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운영 중인 축사가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와 인근 농경지는 보전가치가 높은 우

- 량농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변 축사로 인해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곳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 ③ 인근 마을에서 기존 축사 사이에 장애물이 없이 탁 트인 상태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마을, ○○마을)은 바람 방향에 따라 악취, 해충 등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고, 이 사건 신청지 또한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한번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 ④ 피청구인은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7. ○. ○. ○○군 예규)’을 제정하여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발전시설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우량농지를 보전해 오다가, ○○군 도시계획조례의 개정(2021. ○. ○.)을 통하여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에 축사 관련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피청구인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속하여 노력해온 점,
- ⑤ 신청지에서 약 270m 정도 위치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강 지류인 ○○천이 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천의 오염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러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 등을 감안하여 한 처분이라는 점,
- ⑥ 청구인은 친환경축사로 신축할 예정이고, 신청지는 수질오염, 토질오염, 악취 등 생활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구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축사육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로 인한 오·폐수, 악취, 해충 등으로 그 주변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토양, 수질, 대기 등의 환경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가축분뇨가 퇴비로 토양에 살포되면 그 토양을 직접 오염시킬 수도 있고, 지하수를 따라 ○○천 등 하천으로 유출되어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과 그 사유는 적법·타당하다. 라)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재산상의 불이익에 비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중대한 공익이 더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이나 비례 원칙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Ⅳ. 생활법률 상담사례



1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별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별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 처분별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별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별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交通安全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별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별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2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4년 후 그 친구는 재기하여 재산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어,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청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이미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음을 이유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독립하여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3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채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채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구 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원 5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원 3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이하

◇ 우선변제 금액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

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구 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최대 4천3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최대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	최대 2천만원

4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공소시효 기간

-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5 제가 발명한 기술을 특허등록을 하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 외에 “실용신안”이란 것도 있던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입니다. 두 권리 모두 설정등록에 의해서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개념은 각각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에서 정의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존속기간 및 심사절차상의 차이점 등이 있습니다.

◇ 보호대상의 차이

☞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용신안법」의 주요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한 부분만 다릅니다. 그리고 특허는 물건(물품, 물질)의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 권리의 존속기간의 차이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 10년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 출원 및 심사절차에서의 차이

- ☞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V. 법무단신



1

준공된 아파트 등기절차 이행지체로 미등기 상태 유지됐다면

준공 완료된 아파트에 이미 입주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늦어졌다면, 수분양자들이 등기된 아파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손해 등을 조합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0일 A 씨 등(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강호석, 박건호 변호사)이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청구소송(2020가합6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재정비촉진구역에 위치한 B아파트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은 2019년 6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아파트 준공 인가 전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입주 지정기간을 그 다음날부터 같은해 말까지로 정하고 입주 전까지 잔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라는 내용의 입주안내문을 보냈다. 이에 B아파트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수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받은 A 씨 등은 해당 기간 내 모든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각 세대에 입주했다.

한편, 서울시장은 B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 중이던 2019년 7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하면서 해당 정비구역의 택지 중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의 면적을 확대·추가하고, 조합에게 구역 외 기반시설로 신한천로를 개설토록 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고시를 했다. 이후 성북구청장은 2020년 7월 정비사업과 관련해 정비구역 택지 중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의 면적은 확대하되 해당 면적에 대해선 별도 사업계획승인이 예정돼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했다.

조합은 2021년 5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유지되는 면적을 포함해 신한천로 개설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시 정비계획변경을 이행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에 해당하는 일부 획지에 대해 부분준공 인가를 받았고, 이후 이전고시를 거쳐 같은해 8월 A 씨 등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할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A 씨 등은 "해당 아파트가 완공돼 이미 입주했고 남은 절차는 준공인가와 이전고시 절차뿐인 점 등에 비춰 입주지정기간의 말일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20년 7월 말경엔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후부터 조합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해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등은 △이행지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발생하는 손해(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의 차이) △등기된 아파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미등기로 인해 원하는 시기에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세제 혜택 등 손해를 고려해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은 행정청이 신한천로 개설을 부담시켜 상당한 공사기간이 필요했던 점 등을 주장하지만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와 그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책임 영역에 속하고, A 씨 등의 입주 전부터 신한천로 개설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신한천로 개설 문제로 인한 조합의 등기 절차 이행지체에 조합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판단 과정에서 총회 개최가 지연된 사유가 오로지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의 면적에 대한 성북구청의 사업계획 승인까지 4개월 정도만 소요된 점 등에 비춰보면 입주지정기간 말일부터 2년 가량이 경과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A 씨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조합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 등의 아파트 취득 목적과 사용용도, 활용계획 등에 따라 그 불이익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 각각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해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을 대리한 강호석(39·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최근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조합 내부의 갈등이

많은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일반분양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히는 것에 명백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직권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적용돼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며 "피고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총회 개최가 어려웠고 이러한 사유로 행정청의 보완 요구가 있었으므로 이는 불가항력으로 계약상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총회는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고 보완요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면책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명시했다는 점에서 현재 재건축 사업이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사업 주체 등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판결"이라고 말했다.

2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에 추락... 법원 "아파트관리업체 등 배상책임"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발전기 환풍구 아래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된 입주민에게 아파트관리업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6억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봄메 부장판사)는 2월 16일 A 씨와 그 가족이 아파트관리업체 B사와 C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5977)에서 "B사 등은 공동해 6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5월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 발전기 환풍구 안쪽으로 추락했다. 의식을 잃은 A 씨는 다음 날 아침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절제술 등 응급조치와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사지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해 침상에서만 생활하고 식사는 튜브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또 부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고 인지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불가능해졌다. A 씨의 가족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환풍구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피고들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공작물 하자로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당시 환풍구는 인도 뒤쪽인 지상 주차장 옆에 있어 누구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환풍구 앞 잔디가 훼손되고 흙으로 다져진 길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볼 때 사람들이 평소 환풍구 앞을 자주 통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들은 환풍구 가림막 앞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거나 환풍구 안쪽에 그물망 등을 설치해 가림막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구조물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 환풍구 가림막 앞에 철제구조물이 추가로 설치됐는데, 이 같은 조치를 미리 했더라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판단하고 일실수입과 기왕 및 향후 치료비 등을 산정한 뒤 B 사 등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해 A 씨의 재산상 손해를 6억여 원으로, 위자료는 3600만 원으로 정했다. A 씨의 배우자에게도 위자료 1800만 원이, 두 자녀에게도 각각 위자료 800만 원이 인정됐다.

소송을 대리한 구태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아파트 발전기 환풍구처럼 우리 생활 주변에 흔한 시설물이 의외로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3

**소장 부분 적법 송달된 이후 폐문부재로 판결정본 송달 안돼
공시송달했다면...**

“항소 제기기간 후 나중에 알았다며 추완항소 주장 안돼”

재판진행 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있다

처음 소장 부분은 적법하게 송달됐지만 이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로 간주되고 판결정본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결국 법원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당사자가 항소 제기기간이 지난 뒤에야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했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씨 등(소송대리인 정방수 변호사)이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288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지난 2일 돌려보냈다.

1심 법원은 2020년 3월 30일 소장에 기재된 B 씨의 주소지로 소장 부분 등을 B 씨에게 송달했고, 4월 6일 B 씨는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고도 답변서 등 아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B 씨에게 송달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1심 법원은 같은 해 6월 1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하고 송달간주됐다. 같은 달 30일 1심 법원은 B 씨가 불출석한 가운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B 씨의 주소지로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1심 법원은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해 그해 8월 1일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 B 씨는 항소 제기기간이 지난 같은 해 12월 9일에 이르러서야 1심 법원에서 직접 판결정본을 수령하고 2020년 12월 10일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B 씨는 자신이 기소된 다른 사건의 변호인 사무장이 자신의 민사사건 판결이 이미 선고된 것 같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알아보라고 해 2020년 12월 9일경 법원에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알아보았고, 그제야 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이미 확

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2심은 "B 씨가 2020년 3월 중순경부터 주차된 카라반에 거주하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 등을 더하면 B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진행과 결과를 알지 못해 불변기간인 항소시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12월 9일에서야 선고 사실과 공시송달 된 것을 알게 됐으니 그로부터 2주 이내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을 명해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해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라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소장 부분이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이 B 씨에게 적법하게 송달돼 B 씨는 A 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심 판결 선고 후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한 2020년 12월 9일 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재판 진행 상황을 제때에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B 씨가 실제로 1심 판결 선고사실을 몰라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러한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해당 추완항소는 B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4

"불법 점유자 쫓아내려고 건물에 무단 침입... 건조물침입죄 해당"

건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을 쫓아내려는 목적이었어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조물에 대한 점유 및 업무를 개시한 경우라도 그 점유 및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뤄졌다면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그 점유 및 업무를 해제 내지 배제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교란하는 자력구제는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2022도5940).

A씨 등은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중인 상대가 불법 점유하자 2018년 1월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용역 직원 등을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에게 징역 3~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점유자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공사현장에 대한 경비·관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며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제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는 상황이 아니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 점유자의 점유가 민사상 불법 점유이고 기존 점유자에게 현 점유자에 대한 민사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권리자는 민사소송 및 그 소송결과에 따른 집행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자력구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력구제로써 점유를 탈환하는 경우 건조물침입 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5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차량 자체에 설치·보존상 하자 등 없다면
발화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줬어도 발화된 차량 자체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거나 해당 차량의 소유자 등이 화재 신고를 게을리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발화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당시 이세훈 판사는 DB손해보험이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이명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2가소10020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2월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가던 중 차 내부에서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A 씨의 차량은 전소됐고, 옆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량까지 불에 탔다. B 씨 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자차담보로 B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A 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차주 A 씨가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A 씨의 차량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는 차량 계기판 하부 주변의 기기 또는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기적 요인이나 전기적 요인이 발생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A 씨가 차량을 정비받은 내역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차량이 출고된 후부터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특별한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차량이 임의 개조되거나 튜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차량 구입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블랙박스 등을 설치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차량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운행하다 주차한 직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운행시간이 약 30분 정도에 불과하고, 엔진 과열 등의 기계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주차한 후 연기를 목격한 뒤 곧바로 인근 상가로 가서 119 신고를 하는 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 확대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화손해보험을 대리한 이명현 세창 변호사는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차량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피해자 측 보험사에서 화재와 관련한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량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Ⅵ. 최근 개정 시행법령



소득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하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며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그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 인상(제12조제2호나목)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 기준에 맞추어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제52조제4항 단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55조)

6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천 2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함.

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제59조의2제1항)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이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함.

마.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제59조의3제1항, 제64조의4 신설)

- 1) 종전에는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는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함.
- 2) 종전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1천 200만원까지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15퍼센트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제81조의11 및 제164조의3제1항)

- 1)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 2)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친족 간 증여 시 필요경비 계산 등 합리화(제97조의2제1항 및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조세형평을 제고함.

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제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등)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1월 1일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2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특례기부금: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회복지"를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을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을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표의 공제액란 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 "150만원+50만원"을

"500만원+200만원"으로, "400만원+80만원"을 "1천500만원+250만원"으로, "1천200만원+120만원"을 "4천만원+300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본문 중 "이하 제5항"을 "이하 이 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표의 종합소득과세표준란 중 "1,200만원"을 각각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을 각각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세율란 중 "72만원 + (1,200만원)"을 "84만원 + (1,400만원)"으로, "582만원 + (4,600만원)"을 "624만원 + (5,000만원)"으로, "1,590만원"을 "1,536만원"으로, "3,760만원"을 "3,706만원"으로, "9,460만원"을 "9,406만원"으로, "1억7,460만원"을 "1억7,406만원"으로, "3억8,460만원"을 "3억8,406만원"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중 "과세기간부터"를 "과세기간 개시일부터"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다.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③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12327603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2항 중 "제56조·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및 제57조의2"로 한다.

제59조제2항제3호 본문 중 "7천만원을 초과하는"을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세"를 "8세"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천만원"을 "4천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00만원"을 각각 "600만원"으로,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90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 중 "지급한"을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제8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을 "제164조·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를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64조의3제1항제2호"를 "제164조의3제1항 각 호"로, "총 지급금액"을 "총지급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

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4조제3항제8호가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 나. 채권등의 상환
- 다. 주식 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지분증권의 소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6제1항제4호 중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이익"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2제4항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2022년"을 "2024년"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4제1항 중 "양도소득금액과 제3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 중 "대통령령으로"를 "적격집합투자기구(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1제1항제3호 중 "제87조의2제3호 후단"을 "제87조의2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 중 "제57조"를 "제57조, 제5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전단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8호 표의 양도소득과세표준란 중 "1,200만원"을 각각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을 각각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세율란 중 "192만원 + (1,200만원)"을 "224만원 + (1,400만원)"으로, "1,042만원 + (4,600만원)"을 "1,124만원 + (5,000만원)"으로, "2,470만원"을 "2,416만원"으로, "5,260만원"을 "5,206만원"으로, "1억2,460만원"을 "1억2,406만원"으로, "2억2,460만원"을 "2억2,406만원"으로, "4억8,460만원"을 "4억8,406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9호 표의 양도소득과세표준란 중 "1,200만원"을 각각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을 각각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세율란 중 "192만원 + (1,200만원)"을 "224만원 + (1,400만원)"으로, "1,042만원 + (4,600만원)"을 "1,124만원 + (5,000만원)"으로, "2,470만원"을 "2,416만원"으로, "5,260만원"을 "5,206만원"으로, "1억2,460만원"을 "1억2,406만원"으로, "2억2,460만원"을 "2억2,406만원"으로, "4억8,460만원"을 "4억8,406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2호다목 중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이익"으로 한다.

제1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제11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1항 중 "경우에는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2호 본문 중 "100분의 42"를 "100분의 45"로 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해당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27조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img123276029}$$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3조제1항 단서 중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을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제2항 중 "원천징수한다"를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의 종료일에 원천징수한다"로 한다.

제1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6조의2제1항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로, "그 신청서를"을 "그 신청서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를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로, "제출받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을 "함께"로, "신고서와 신청서를"을 "신고서와 신청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지급자는"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의6제1항 중 "제한세율을"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를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로, "신고서를"을 "신고서와 함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원천징수의무자는"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한다.

제16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제1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1호·제2호,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조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제37조제5항, 제87조의2제3호, 제87조의6제1항제4호, 제87조의12제4항, 제87조의13제3항, 제87조의14조제1항·제3항,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라목, 제87조의21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7조의27제2항, 제119조제2호다목, 제128조제1항 및 제14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제15조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7조의2,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 부분은 제외한다),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4.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 제160조의2제3항 및 제163조의3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제5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

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명세서등 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64조제7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11제5항 및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각각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권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주택임대소득 비과세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기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접대비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 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제13조(퇴직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종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호나목, 제10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18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기에 관하여는 제1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의2·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VII.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구성

■ 다문화가족의 구성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 등

-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제1호 및 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국적 취득

■ 국적 취득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귀화허가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가 있습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및 제7조).

■ 일반귀화

-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성년(만 19세 이상) 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국적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어 있을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간이귀화

-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1항).
 -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이었던 사람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 및 제5조 제1호·제1호의2).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1.이나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위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1.이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위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특별귀화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③ 성년일 것 또는 ④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7조제1항, 제5조 제1호·제1호의2·제2호·제4호).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화를 허가받으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국적법」 제7조제2항).

■ 신청절차와 심사 등

■ 귀화허가의 신청

-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귀화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5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귀화요건 심사를 위한 조화·조사·확인 등

-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화,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본문).
-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다만, 귀화허가 신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단서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항).

구 분	요 건
종합평가 면제	· 미성년자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귀화허가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면접심사 면제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귀화허가 신청자의 귀화요건 심사를 위한 조화·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함)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종합평가를 면제한 경우나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 귀화허가의 제한

-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
- ✓ 귀화허가 신청자의 귀화요건 심사를 위한 조화·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 ✓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 ✓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국내 정착

◆ 취업지원

■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지역환경 및 결혼이민자의 특성 등에 따라 직업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구분	대상	신청방법
결혼이민여성 인턴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자녀와 그 보호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신청 (1544-1199)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등록된 구직희망 여성결혼이민자	
새일센터 인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자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자 출산, 육아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여성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업교육 훈련생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함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결혼이민 구인구직등록 후 상담 등을 통하여 취업 알선	고용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신청(국번없이 1350)
여성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	여성결혼이민자와 새마을부녀회원간의 멘토결연 추진 및 지도자 양성교육	지역 새마을부녀회로 신청02-2100-3647
국내거주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국내거주 외국인 의료관련 인력으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자(중국·몽골·베트남 등) 외국인환자유치및응대에필요한진료코디네이터양성교육(중국·몽골·베트남 등)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www.kohi.or.kr) 02-3299-1420

Multicultural Families

◆ Composition of a multicultural family

▣ Immigrants by marriage

■ Immigrants by marriage, etc.

- Immigrants by marriage, etc. refers to any one of the following persons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2, subparagraphs 3 and 1 of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Nationality Act”).
- Immigrants by marriage: Any foreign resident in Korea (those who do not possess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o have legally stayed in Korea for the purpose of residing in Korea) who has or has had a marital relationship with a Korean national.
- Persons who acquired the permission of naturalization: A foreigner who has no history of acquiring Korean nationality but obtained nationality after getting the Attorney General’s permission of naturalization by meeting specific qualifications.

◆ Employment support

▣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Project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 Vocational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 Multicultural families are entitled to receiv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necessary for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etc. required for improving their language

communication skills, as well as programs related to vocational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regional environ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migrants by marriage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Programs supporting employment of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Classification	Eligible applicants	How to apply
Internships for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Children and caregiv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and their children, single-parent families, and families with children raised by their grandparents	Apply through Saeil Center for Women (1544-1199)
Vocational education for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Job-seeking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who are registered with the Saeil Center for Women	
Internship at the Saeil Center	Job-seeking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who are registered with the Saeil Center for Wome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t the Saeil Center	Job-seeking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who are registered as job seekers with the Saeil Center for Women. Vo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are provided for women whose careers have been interrupted due to childbirth, childcare, etc. but priority is given to those of the underprivileged class of employment, such as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etc., in the selection of vocational education trainees.	

Employment support program for immigrants by marriage	Immigrants by marriage: After registering as a job seeker, jobs are referred through counseling, etc.	Apply to employment center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1350 with no area code)
Education for cultivation of leaders for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Formation of mentoring relationships between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and a member of the Saemaul Women's Association and leader cultivation education	Apply to regional Saemaul Women's Association 02-2100-3647
Programs for cultivation of foreign medical treatment coordinators residing in Korea	Personnel related to medical services for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who can speak Korean. Training of medical coordinators required for bringing in and dealing with foreign patients (from China, Mongolia, Vietnam, etc.)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http://www.kohi.or.kr) 02-3299-1420

多元文化家庭

◆ 多元文化家庭的组成

■ 结婚移民者

■ 结婚移民者等

- “结婚移民者等”是指符合下列任意一项描述的多元文化家庭成员（《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2条第2号、《在韩国外国人待遇基本法》第2条第3号和第1号、《国籍法》第4条第1项）。
- 结婚移民者：与韩国国民有过或有婚姻关系的在韩国外国人（以在韩国居住为目的，在韩国合法滞留的非韩国国籍拥有者）
- 获取归化许可者：无取得韩国国籍之事实的外国人具备一定条件后，经法务部长官的归化许可取得韩国国籍的人

◆ 就业支援

■ 职业教育及女性结婚移民者就业支援事业

■ 多元文化家庭职业教育

- 通过各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根据地区环境和结婚移民者特性等提供的职业教育相关项目，多元文化家庭可得到在韩国生活所需的职业教育培训和提升语言沟通能力所需的韩语教育等支援（《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6条第1项）。提供系统的职业培训。

■ 女性结婚移民者就业支援事业

分类	对象	申请方法
结婚移民女性实习	多元文化家庭、女性结婚移民者及其子女、单亲家庭、祖孙家庭等弱势家庭及其子女和监护人	向女性新工作中心申请 (1544-1199)
结婚移民女性职业培训	希望求职且已在女性新工作中心登记的女性结婚移民者	

新工作中心实习	希望就业的女性结婚移民者中，在女性新工作中心进行求职登记者	
新工作中心职业教育培训	希望就业的女性结婚移民者中，在女性新工作中心进行就职登记者 这是面向因分娩或育儿等原因导致工作经历断节的女性运营的职业教育培训课程，但在选拔职业教育培训生时赋予女性结婚移民者等就业弱势阶层优先权	
结婚移民者就业支援事业	面向结婚移民者 进行就业招聘登记后，通过提供咨询服务等介绍就业	向雇用中心或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申请 (免区号拨打1350)
拥有女性结婚移民者身份的 指导者培养教育	在女性结婚移民者和新村妇女会员之间 推进形成指导关系，并开展指导者培养教育	向地区新村妇女会申请 02-2100-3647
面向在韩国居住的外国医疗 人力开展的诊疗 调解人培 养事业	在韩国居住的外国人中掌握韩语的医疗相关人力 (中国、蒙古、越南等) 吸引和接待外籍患者所需的诊疗 调解人培养教育 (中国、蒙古、越南等)	韩国保健福利人力开发院 (http://www.kohi.or.kr) 02-3299-1420

Gia đình đa văn hóa

◆ Cấu tạo gia đình đa văn hóa

■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là thành viên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là người thuộc một trong các đối tượng sau (Điểm 2 Điều 2,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Điểm 1 và Điểm 3 Điều 2, Luật cơ bản về đãi ngộ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Khoản 1 Điều 4, Luật quốc tịch):
-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trong mối quan hệ kết hôn hay đã từng kết hôn với công dân Hàn Quốc (người không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đang cư trú hợp pháp với mục đích cư trú tại Hàn Quốc)
- Người nhập quốc tịch: người nước ngoài thực tế không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có đủ điều kiện nhất định, được chấp thuận cho phép nhập tịch từ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và từ đó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 Hỗ trợ việc làm

■ Dự án giáo dục nghề nghiệp và hỗ trợ việc làm cho phụ nữ kết hôn nhập cư

■ Đào tạo việc làm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 Gia đình đa văn hóa được cung cấp đào tạo việc làm và các chương trình có liên quan tùy theo đặc điểm của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và môi trường địa phương, từ các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như giáo dục tiếng Hàn để nâng cao khả năng giao tiếp, giáo dục và đào tạo việc làm cần thiết khi sống tại Hàn Quốc (Khoản 1 Điều 6,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Chương trình hỗ trợ việc làm cho phụ nữ kết hôn nhập cư

Phân loại	Đối tượng	Cách đăng ký
Thực tập cho phụ nữ kết hôn nhập cư	Người bảo hộ và con cái của gia đình gặp khó khăn như gia đình đa văn hóa, phụ nữ kết hôn nhập cư và con của họ, gia đình bố mẹ đơn thân, gia đình ông cháu hoặc bà cháu	Đăng ký tại Trung tâm việc làm mới dành cho phụ nữ (1544-1199)
Đào tạo việc làm cho phụ nữ kết hôn nhập cư	Phụ nữ kết hôn nhập cư có mong muốn tìm việc làm đã đăng ký tại Trung tâm việc làm mới (saeil) dành cho phụ nữ	
Thực tập tại Trung tâm việc làm mới (saeil)	Phụ nữ kết hôn nhập cư muốn đi làm đã đăng ký tìm việc tại Trung tâm việc làm mới	
Giáo dục và đào tạo việc làm tại Trung tâm việc làm mới (saeil)	Phụ nữ kết hôn nhập cư muốn đi làm đã đăng ký tìm việc tại Trung tâm việc làm mới Chương trình giáo dục và đào tạo việc làm dành cho đối tượng phụ nữ bị gián đoạn việc làm do sinh sản, nuôi dạy con v.v. Chính sách ưu tiên với người gặp khó khăn như phụ nữ kết hôn nhập cư khi tuyển sinh khóa đào tạo việc làm	
Chương trình hỗ trợ việc làm dành cho phụ nữ kết hôn nhập cư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được tư vấn giới thiệu việc làm sau khi đăng ký tìm việc	Đăng ký tại Trung tâm việc làm,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Không mã vùng-1350)

Giáo dục, bồi dưỡng người hướng dẫn phụ nữ kết hôn nhập cư	Giáo dục bồi dưỡng người hướng dẫn và đẩy mạnh liên kết tình thân giữa hội viên phụ nữ Saemaeul và phụ nữ kết hôn nhập cư	Đăng ký tại Hội phụ nữ Saemaeul ở địa phương 02-2100-3647
Chương trình bồi dưỡng điều phối viên y tế là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Nhân lực người nước ngoài có chuyên môn y tế đang sống tại Hàn Quốc và có khả năng sử dụng tiếng Hàn (như người Trung Quốc, Mông Cổ, Việt Nam v.v) được giáo dục, bồi dưỡng trở thành điều phối viên y tế để giúp đỡ các trường hợp điều trị và thu hút các bệnh nhân người nước ngoài	Viện phát triển nhân lực y tế và phúc lợi Hàn Quốc (http://www.kohi.or.kr) 02-3299-1420

VIII. 법제처 법나들이



학교폭력 예방법



어린이청소년 생활법령



구성 | 손낙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에 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20조의2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번없이 117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을 통해서도 전화나 문자,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